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5.] [통일부고시 제2022-1호, 2022. 1. 5., 일부개정]

통일부(인도협력기획과), 02-2100-58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 한다)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

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소개서 1부
2. 대북지원사업 계획서(대북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추진실적 포함) 1부
3.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정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거나 제6조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하여 집행하되,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표하여 집행한다.

제4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물품이 단일지역에서 분배되는 단순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물품반출입 등에 한한다)이 없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3항에 따른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재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추진경위
- 나. 주요내용
- 다. 세부 추진계획
-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마. 기대효과

2. 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의 명칭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 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9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 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10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5. 북한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관련 대북지원사업
 6.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 ④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 ⑤ 기금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연 3회에 한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당 연 1회에 한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자금의 용도) ① 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3.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8%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 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 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이하"물품 등의 계약"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 결정전 자체재원 선투입 등 사업추진 과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7.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기금지급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른 집행절차 중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기금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출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대북지원사업자의 북한 방문)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가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의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사전협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①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운송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비공개)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제출받은 후에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한다. 다만,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제출 전에 국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대외 비공개로 전제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호,2022.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